「2026년 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 사업」 테크글로벌(글로벌 성장 지원) 사업 시행 공고

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는 특화 및 연계 분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『2026년 경남진주강소특구 테크글로벌(글로벌 성장 지원)』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.

2026년 5월 19일

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장

Ⅰ 사업 개요

□ 사업명: 2026년 경남진주강소특구 테크글로벌(글로벌 성장 지원) 사업

□ 사업예산: 총 2,000만원(VAT 포함)

□ 사업비 지원방식: 바우처 방식

※ 신청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전문수행기관(전문가)이 공급하고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에서 납품확인 후 전문수행기관(전문가)에게 직접 지원금 지급

□ **사업기간: 공고일로부터 ~ 2026. 12. 31.(목)까지**

□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

○ 특화 및 연계분야 기업의 전략적 육성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**수요 기반 맞춤형 성장 지원**

○ 기업의 글로벌 기술 수요 발굴을 위한 **기술사업화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**

○ **글로벌 전시회, 수출상담회 참가등을 통한 해외 바이어 발굴 및 해외 판로 개척 지원**

□ 분야정의

○ 특화분야: 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·소재

○ 연계분야: 기계, 조선, 자동차, 전기전자, IT, RT, NT, BT 등의 분야

Ⅱ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

□ 지원대상 (①, ② 모두 해당되어야 함)

①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[자료1 참고] 및 진주 관내 소재 기업

② 특화 및 연계분야 기업

□ 지원내용

지원유형	지원항목	지원규모
글로벌 성장 지원	① 글로벌 전시·박람회 참가 및 현지 협업 추진을 위한 제작 ○ 국내·외 전시회 참가 시 전시 및 기술설명을 위한 **시제품 모형 제작** ○ 현장 바이어 매칭을 위한 **영문 홈페이지 제작** ② 상담, 수출준비 등 글로벌 판로 개척을 위한 제작 ○ 상담 대응을 위한 **수출용 제품 샘플 또는 제품 포장라벨 제작** ○ 글로벌시장 사업화를 위한 기술 및 제품 **홍보영상 또는 홍보인쇄물 제작**	2,000만원 (기업당 최대 500만원 미만 지원)
※ 글로벌 전시회 기준: 판버러에어쇼(FIA 2026), 베를린 국제항공우주전시회(ILA) 등 2026년 5월~12월에 진행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 **※ 지원금액 : 기업당 500만원 미만 지원** **※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건수 및 지원비가 조정될 수 있음**		

□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징수: 해당 없음

□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: 신청기업에 귀속

III 제외대상 및 관계 법령

○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: 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」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

검토사항	내용
참여제한 해당 여부	• 신청기업, 신청기업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총괄(과제)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
공고내용과의 부합성	•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
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	•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. 다만,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음 • 전문기관의 장은 **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를 통해**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하며, 유사성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함 •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"중단(성실, 불성실)"이나 "불성실수행"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
의무사항 불이행 여부	• 신청기업, 공동연구개발기관, 총괄(과제)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	•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, 신청기업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총괄(과제)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. 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은 적용하지 아니함 (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) 1. 기업의 부도 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중소기업

검토사항	내용
	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 3. 「민사집행법」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 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 5. **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**(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.)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"BBB" 이상인 경우 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,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.) 이때,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※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「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 등)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(RCPS)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※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※ 상기의 신용등급 'BBB'에는 'BBB+', 'BBB', 'BBB-'를 모두 포함함 6. **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** ※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심 여부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
□ 관련법령 및 규정

근거법령	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○ 과학기술기본법,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, 시행규칙 ○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○ 국가연구개발 시설.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
관련규정	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

※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

Ⅳ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

□ 추진체계

○ (경남진주강소특구) 평가위원회, 사업관리 및 정산 등

○ (평가위원회) 선정평가

○ (신청기업·수행기관) 제작 및 결과보고서

□ 추진절차

사전 수요조사		공고·접수		선정평가		사업수행		결과보고
수요기반 맞춤형 성장지원	⇨	공고 및 신청기업 접수	⇨	수혜기업 (서면)선정평가	⇨	글로벌사업 수행 등 (사업비정산)	⇨	결과보고
~'26. 5.		공고일로부터 ~ 5. 26.(화)까지		'26. 5. 29.(금)		~'26. 12. 31.(목)		12월 중

※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Ⅴ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

□ 평가일정 및 절차

○ (평가일정) 2026년 5월 29일(금) (예정)

○ (평가절차) 평가기준에 따라 내·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진행

□ 평가기준

구분	평가항목	비중(%)
추진계획 타당성	○ 사업 준비도 및 사업 목표의 명확성 ○ 사업 추진 방안의 타당성(계획, 방법 등)	30
지원 필요성 및 추진역량	○ 지원의 필요성 ○ 지원내용의 적정(합)성 ○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	40
지원 효과성 및 사업비 적정성	○ 사업지원의 기대효과(성과 활용계획, 성과 창출 가능성 등) ○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및 합리성	30
합계		**100**

[유의사항]

※ 평가항목 및 비중 등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※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

※ 평가를 통해 종합 평점이 60점 이상이 과제는 "지원가능과제", 종합 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"지원제외"로 분류함

Ⅵ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○ 신청기간: **공고일로부터 2026. 5. 26. (화) 17:00까지**

○ 사업공고: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s://innopolisjinju.com)

○ 신청방법: 이메일(innopolis@gnu.ac.kr) (※ 선정 시 관련서류 원본 제출)

□ 제출서류

번호	제출서류	서식	비 고
1	사업신청 공문	-	신청기업 자체양식
2	사업 신청서 및 활동 계획서	서식 1호	
3	사업자등록증 사본(원본대조필)	-	
4	법인등기부등본 (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)	-	신청기업 (법인인 경우)
5	최근 3개년(`23~`25년)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(원본대조필)	-	
6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(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)	-	
7	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	서식 2호	
8	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확인서	서식 3호	
9	의무이행서약서	서식 4호	

<제출서류 유의사항>
*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해당연도 자료만 제출(당해연도 창업기업의 경우 제출 예외)
※ 신청서 내 국가12대전략기술 작성 필수
①반도체 디스플레이 ②이차전지 ③첨단모빌리티 ④차세대 원자력 ⑤첨단바이오 ⑥우주항공해양
⑦수소 ⑧사이버보안 ⑨인공지능 ⑩차세대통신 ⑪첨단로봇제조 ⑫양자

□ 문 의 처

담당자	연락처	E-mail	비 고
기업육성사업담당	055-772-4844	innopolis@gnu.ac.kr	사업신청 관련문의
주소	(우)528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국립대학교 항공우주산학협력관(407동 204호)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		

Ⅶ 유의사항

□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□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

□ 지원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□ 적격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
□ 이의 신청 시 개별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

□ 선정된 기관은 경남진주강소특구의 요청에 따라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, 요청이 있을 시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함

□ 사업비 사용 내역은 정산검토 결과에 따라 불인정 될 수 있음

□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협약해약 및 향후 경남진주강소특구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

□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,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·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□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·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

□ 선정 기업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경남진주강소특구에 지원 후 5년간 사업 성과(매출, 투자, 고용 등)를 제출하여야 함

자료1 경남진주강소특구 소재지 확인

○ 토지이음(https://www.eum.go.kr) 내 주소 검색 후 범례(연구개발특구) 확인

1. 토지이음 접속 후 사업장 주소 입력하여 열람

2. 검색 결과에서 범례(연구개발특구) 유무 확인

소재지	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		
지목	학교용지	면적	278,987 ㎡
개별공시지가(㎡당)	598,000원 (2025/01) 연도별보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		
지역지구등 지정여부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 · 지구등	보전녹지지역 , 자연녹지지역 , 대학(2020-06-25)(대학교06)(저촉) , 대학(대학교06)(저촉)	
	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· 지구등	가축사육제한구역(모든축종 제한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가좌초등학교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가좌초등학교병설유치원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교육·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(R&D융합지구(경상대))<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>, 연구개발특구(강소연구개발특구 경상대)<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>, 하천구역(가좌천)<하천법>	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			
확인도면			